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06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5
(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과의 비교	6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7
3.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9
4. 인재양성전략회의(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4
5. 전략회의 지원본부(안 제15조)	18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안 제24조)	19

※참고자료

1. 2022.9.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불임자료	21
2. 2023 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1.
3. 회부연월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양성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법 정부·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총괄·조정·점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해당 시·도의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11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

재양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23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임.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비해 제정안은 지방자치 및 민관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인재양성 책무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계획(*참고자료 1)에 따라 폐지대상 위원회에 해당하게 된 바, 제정안은 이를 대체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년에 발간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을 꼽고, 그 구체적 과제로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 제·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2)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본칙 26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됨.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 본칙(26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4조(인재양성 업무의 지원)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국가인재양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6조(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7조(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3장 인재양성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인재양성전략회의)	제14조(전략회의 심의 결과의 활용)
제12조(전략회의의 구성)	제15조(전략회의 지원본부)
제13조(전략회의의 운영)	
제4장 인재양성정책의 점검·지원 등	
제16조(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제20조(초광역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지원)
제17조(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제21조(조사·분석 등)
제18조(인재양성정책책임관의 지정)	제22조(인재양성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제19조(지역인재양성정책의 추진)	제23조(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
제5장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망 구축 등	
제24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26조(민간기관 등과의 지원 및 협력)
제25조(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 부칙(5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4조(「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과의 비교

가. 제명 변경

제정안은 제명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제2조(정의)에서 인재 및 인재양성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제명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이 인재양성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에 대한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나.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의 확대

제정안은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으로 대체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의무만 부과함)하고 있음.¹⁾

1) 다만, 현행법 제7조의3제2항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심의 안건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설치

제정안은 기존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부위원장은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과 외부위원 중 1인이 되도록 함²⁾)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회의 지원본부를 교육부에 두도록 하고 있음.

라. 기타 인재양성 관련 규정

제정안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초광역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지원(안 제20조),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분석(안 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정안은 인재양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확인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규정하던 인적자원,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각각 인재, 인재양성, 인재양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음.

2)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제12조(전략회의의 구성) ① 전략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교육부장관과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인재양성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총괄·조정·점검·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란 개인의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인재양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재양성기관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배치·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인재양성정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을 위하여 마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말한다.

다만, 제정안은 인재양성정책의 주요 관계주체로서 인재양성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재양성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교육부가 인재양성의 주무부처로 정부조직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재양성 업무를 총괄하며 범정부 민·관협의체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운영중이고, 부처·산업별 인재수요 대응에 따른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인재양성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인재양성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실질적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회의체(국무회의, 현안조정회의)로 이견을 조정하는 등 느슨한 형태의 현재 협업방식이 제정안보다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3.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6조(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④ 인재양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양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재양성 관련 규제 개선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6.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육기관·산업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8. 인재양성 관련 정보관리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인재양성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양성·유치에 관한 사항
11. 인재양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2. 인재양성정책 관련 각 부처별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

진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매년 해당 시·도의 인재양성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인재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 인재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양성·유치·채용 및 정주·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인재양성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3. 시·도 인재양성계획 시행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인재양성기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인재양성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9조에 따른 시·도 인재양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래인재양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정안은 그러한 현실에 맞춰 시·도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해당 계획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충돌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기구로서,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³⁾함.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과 국가교육발전계획 모두 인재양성과 교육제도 개편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협력체계 없이는 실무적인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인재양성전략회의 간 협의절차를 규정하거나, 전략회의의 구성에 국가교육위원장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상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그 실질적 실효성 확보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시·도 인재양성계획 등이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바,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인재양성 정책이 중장기적 재정계획과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우선순위 반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국가교육위원회는 인재양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동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이 동 법안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검토의견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6조제1항의 계획 수립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제3항에 전략회의 이전 ‘실무조정회의’의 운영

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력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제정안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국교위 위원장을 전략회의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교위와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수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 인재양성전략회의(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양성정책 조정·평가·분석,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두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교육부장관 및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 부의장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하는 등 구성하며,

회의의 의결정족수, 전략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전략회의 지원본부 설치 등을 정하고 있음.

제11조(인재양성전략회의) ①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에 따른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인재양성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의장이 제안하는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전략회의의 구성) ① 전략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교육부장관과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인재양성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략회의의 운영) ① 의장은 전략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전략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실무조정 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전략회의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략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전략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분과회의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략회의 심의 결과의 활용) ① 전략회의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인재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전략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

협력 협의체로서, 지난 2023년 2월 1일 출범하였음. 2025.3.19. 개최된 4차 인재양성전략회의까지 총 4번의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현황 >

차수	개최일	주재자	논의안건	성과
1차	2023.2.1.	대통령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양성 전략 수립 인재양성 3법 추진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RISE) 구축 등
2차	2023.5.26.	국무총리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이공계 인재 지원 에코업·에너지 인재양성 구체화 분야별 중장기 인재양성 방안 마련
3차	2024.9.27.	국무총리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발표 정책수요자와 현장 소통 강화
4차	2025.3.19.	대통령 권한대행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5대 우주강국 도약 인재양성방안	학-연 협력 강화 우주항공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완성

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전략회의의 제도화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체 신설하는 것이나,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 저조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위원회 폐지를 위한 법이 발의 중에 있으므로 동 위원회와 구성·운영방식이 유사한 ‘전략회의’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제정안의 전략회의는 2023년부터 민관협의체로 운영중인 ‘인재양성전략회의’와 구성·기능이 유사한바, 정부위원회가 아닌 현행과 같은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5. 전략회의 지원본부(안 제15조)

제정안은 전략회의의 사무 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부에 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15조(전략회의 지원본부)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재양성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 및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조정·점검·지원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조직·정원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로 규정해야 하므로, 전략회의 지원본부를 교육부 소속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전략회의 지원본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규정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와 유사한 취지로 보이며, 향후 제정안 통과 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직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안 제24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양성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4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양성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지역의 행정기관과 지역 내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24조제2항은 협력망에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항에 따르면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이미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만약 제정안의 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2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제1항의 단서로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해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188

4) “...구축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 등을 협력망에 포함할 때는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포함시켜야 한다.”

※ 참고자료

1. 2022.9.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붙임자료

붙임1 정비대상 위원회(246개) 목록

○ 전체 636개 위원회 중 **246개** 정비 (39%)

○ 운영실적 저조, 단순자문 성격 등 **166개**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된 **80개** 위원회는 他 위원회와 통합 (134개→54개, △80개)

*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 (위원 위
축 X, 회의 종료 후 해산) 또는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

주관 부처	정비수	정비내용	
농식품부	17	통합 (3)	농림종자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
		폐지 (14)	간척지운영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 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해수부	13	통합 (8)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위),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종자위원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폐지 (5)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원양산업발전 심의회
환경부	14	통합 (9)	빛공해방지위원회 (→환경보건위),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배출권운영위), 지질공원위원회 (→국립공원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권운영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안전위),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안전위)

주관 부처	정비수	정비내용	
		폐지 (5)	(담)사전검토협의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국토부	32	통합 (5)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건설산업위),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 녹색물류협의기구 (→국가물류정책위)
		폐지 (27)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준수사항 위반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항공학적검토위원회,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
교육부	16	통합 (9)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기초학력보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국사편찬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폐지 (7)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방부	10	폐지 (10)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국방개혁위원회, 국방정보화자문협의회,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 소요검증위원회,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조실	6	통합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폐지 (5)	시민사회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문체부	13	폐지 (13)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만화진흥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산업부	14	통합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에너지재정운용위), 상생형 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진흥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너지위), 전력정책심의회 (→에너지재정운용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민관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에너지위)

주관 부처	정비수	정비내용	
		폐지 (7)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기술전문위원회, 이력진흥위원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과기부	11	통합 (7)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핵융합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
		폐지 (4)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기부	5	폐지 (5)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복지부	18	통합 (4)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
		폐지 (14)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물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익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 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기재부	9	폐지 (9)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고용부	5	통합 (2)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폐지 (3)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행안부	15	통합 (6)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해복구 영향평가심의위),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운영위원회 (→지진·화산방재정책위)
		폐지 (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법무부	6	폐지 (6)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교육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통일부	1	폐지 (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외교부	2	폐지 (2)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가부	4	폐지 (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정부지원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주관 부처	정비수	정비내용	
공정위	1	폐지 (1)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방통위	5	통합 (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분쟁조정위)
병무청	1	폐지 (1)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산림청	3	통합 (3)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복지심의위), 석재산업심의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
경찰청	1	폐지 (1)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관세청	2	통합 (1)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와 통합)
		폐지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식약처	5	통합 (4)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의료기기위),
		폐지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특허청	1	통합 (1)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농진청	1	통합 (1)	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촌진흥사업심의위)
해경청	1	폐지 (1)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국세청	2	폐지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기준경비율심의회
금융위	4	통합 (2)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폐지 (2)	분담금관리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소방청	2	폐지 (2)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문화재청	2	통합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와 통합)
		폐지 (1)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보훈처	1	폐지 (1)	국가보훈위원회
인사처	2	폐지 (2)	공직인사혁신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교육부, 문체부	1	통합 (1)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2. 2023 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국제질서의
재건과 한반도

삼중고 속
한국 경제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법률안 6건(2022.9.30. 기준)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2023년에도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향후 3~4년 이후에는 초·중·고교 학생 수 감소에 이어 학급 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더라도 전체 초·중등교육 예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이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초·중등교육 예산의 일부를 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국회에서는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원격교육의 질 제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여건 마련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중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교육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 제·개정 필요

- 미래인재양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칭)「인재양성기본법」의 제·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31개 부처, 226개 부처별 중장기 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국가 수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가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조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사업예산 사전협의, 인재양성정책 평가 및 영향평가, 인재양성정책센터 등을 운영하여 미래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